

행정구역별			행정구역면적 (km ²)	도시계획구역(km ²)			비 고
도	군	읍		기정	변경	변경후	
경상남도	고성	고성	36.41	14.28	-	14.28	

○ 용도지역결정(변경)의 총괄 및 사유는 의안 제3,4,5페이지 참조

4. 군의회 의견요청 사항 : 고성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본 의회에 의견요청한 건으로
-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기에 재언급을 생략하고 금번에 용도지역 결정부분의 변경사유 부분에서 의안의 4페이지에 도면표시번호 ①항의 기월리 철성고등학교 서쪽편 자연녹지에서 78,900㎡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과 ②항의 기월리 운동장 동쪽의 생산녹지지역 294,700㎡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경지정리된 용배수가 잘된 우량농지로서 현 고성읍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요인이 없는 여건에서 주거지역 변경은 우량농지의 잠식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
- ③④⑤ 송학리 새터마을 동쪽 송학리 정류장 이전부지, 송학리 새터마을 남측의 용도지역 변경은 앞으로의 정류장 이전후의 주변도시 발전에 부합되는 변경으로 생각됨
- ⑥⑦⑧항 외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부합되는 변경으로 사료되며 ⑨항의 울대리 및 동외리 기존 공업지역 북측의 공업지역 확장부분에는 공업지역 지정과 동시에 구획정리 사업이 실시되어 진입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직선화 되어 공단의 외계시야가 정리되고 자투리 부지가 산재되는 소모가 없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⑩~⑮항까지는 균형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변경으로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 지적된 각 항목은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거지역의 확장은 주택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요인이 없는데 확장한 요지는
- 답 : 앞으로 안정공단의 유치와 창포공단 등 증가요인이 있으므로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인구를 유치할 계획임.
- 문 : 전원도시화라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문화공간, 공원확장 등은 없이 주거지역만 확대할 것인지
- 답 : 문화공간 등은 본 계획에서 누락되었음.
- 문 : 당초 공업지역 지정지역내의 공대지가 있는데도 확장 결정한 사유는
- 답 : 공업지역은 연관있는 업체가 연계 입주해야 활성화 될 것임으로 확장함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불임과 같은 의견을 회시키로 의결하였음.
※ 고성군의회건의서 : 별첨

고성군의회 의견서

제 목	고성도시계획재정비에대한군의회 의견요청안
<p data-bbox="252 659 496 714">□ 의 견</p> <p data-bbox="331 769 1461 1181">금회에 제출된 고성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기존 용도 지역 및 시설결정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계획 목표년도인 2006년까지 우리군 인근지역에 조성되는 공단으로 유입될 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치 하는 기반조성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 data-bbox="619 1484 1031 1539">1998년 11월 7일</p> <p data-bbox="308 1709 1334 1776">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욱</p>	